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완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571

발의연월일: 2022. 1. 26.

발 의 자: 박완주·김민철·백혜련

서영교・양기대・오영환

오영훈 · 이형석 · 임호선

한병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, 신호기·안전표지·과속방지시설·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여야 함.

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 어린이 보호시설 중에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노후하여 방치된 시설이 있어 어린이에 대한 보호효과가 떨어지고,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
•시행하여야 하고,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설

계 및 준공 시에, 그 외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개선·정비하여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(안 제1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을"을 "제2항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5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"을 "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(이하 "어린이 보호시설"이라 한다)를"로, "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"를 "어린이 보호시설의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· 시행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.
- 1.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: 설계 및 준공 시
- 2. 제1호 외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: 3년마다
- ⑥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, 제5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	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
및 관리) ① (생 략)	및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	<u><</u> 삭 제>
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	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,	
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	
공동부렁으로 정한다.	
<u>③</u> (생 략)	<u>②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<u>④</u> 시·도경찰청장, 경찰서장	<u>③</u>
또는 시장등은 <u>제3항을</u> 위반하	<u>제2항을</u>
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	
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	
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	
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	
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	
설치하여야 한다.	
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	<u>4</u>
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	
이의 안전을 위하여 <u>다음 각</u>	<u>다음 각 호</u>
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	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(이하
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	"어린이 보호시설"이라 한다)를
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	<u></u> 어린이 보호시설
<u>장비의</u>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	<u>의</u>

다.

1. ~ 4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__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⑤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시설 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검하여 야 한다.
- 1.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로

 지정하는 경우 : 설계 및 준

 공 시
- 2. 제1호 외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: 3년마다
- ⑥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 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, 제5 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 육부,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 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